

1. 개정 이유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개정('24.9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새롭게 위임된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기관, 정보 공통관리 시스템, 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 제도 관련 상세 규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일부 개정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 신설)
- 나. 해양수산 연구개발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의 정보수집 범위, 처리시기, 방법, 절차 등 관련 사항을 고시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의2 신설)
- 다. 신기술인증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인증표시 방법 구분을 위해 신기술 인증방법, 사용용도 등 관련 문구를 개정함(안 10조 개정)
- 라. 해양수산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제도의 신청, 평가, 확인서 발급, 연장 신청 등 세부절차에 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11조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 의 : 관계 부처와 협의 예정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해양수산부령 제 호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제4조 및 제5조로 하며, 제3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

다. 그 밖에 연구 장비·시설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예산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 할 것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연구과제의 지원

2. 유허 연구 장비·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여

3. 연구 장비·시설 구축·운영 관련 기술 지원

4. 연구 장비·시설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제5조의2(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정보의 표준화

2. 연구개발정보 관리·제공에 대한 평가·개선

3. 연구개발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4. 연구개발정보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정보 체계와의 연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의 조사, 수집 절차, 처리 주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중전의 제9조)제1항 중 “별표와”를 “별표1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을 “신기술과 관련한”로 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등) ① 영 제17조의2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 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평가)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서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⑤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성능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 1부
2.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 ⑦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6조제4항 관련 별지 제3호 서식을 개정한다.
- 제6조제6항 관련 별지 제3호의2 서식을 개정한다.
- 제7조제1항 관련 별지 제4호 서식을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5호의2 서식을 개정한다.
- 제8조제2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을 개정한다.
-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을 개정한다.
- 제11조 관련 별표 2 및 별지 제8호부터 제10호를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 0. 00.>

이의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구분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이의신청 대상	기술 또는 제품·시설명			
이의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청사유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합니다)			
	(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 목록을 적습니다)			
	1. 2. 3.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이의신청인	→ 접수 해양수산부	→ 조사·검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심의위원회 (필요시)	→ 결과 통보 해양수산부

이의신청 답변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구분	☐ 신기술 인증 ☐ 신기술적용 제품·시설 확인		
답변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소		
	소속	성명	직위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번호
	휴대전화(선택사항)		
답변 대상	기술 또는 제품·시설명		
답변 내용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을 증명하는 자료의 목록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답변합니다.

년 월 일

답변인 기관(업체)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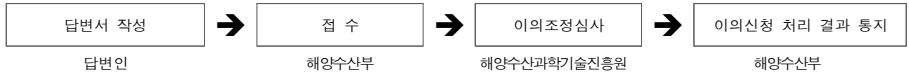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답변인 제출서류	답변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구분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수	자본금	백만원	(전년도)매출액	(전년도)영업이익
	명		백만원	백만원	
	기업유형		사업자등록번호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기타)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영여조합법인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선택사항)				
신기술 관련	신기술명		적용된 제품·시설 명칭(제품일 경우 규격, 모델명)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 인증기간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유효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 신청 사유	(신기술 인증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의 활용실적 등 연장신청 사유를 적습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발급받은 신기술 인증서 또는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 1부 2. 연장 신청사유 증명자료	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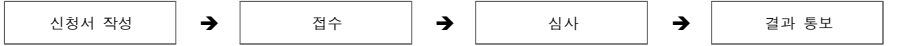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영문 인증서·확인서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구분		☐ 신기술 인증 ☐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소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선택사항)						
구분		한글명		영문명		비고	
기재 내용	제품명 또는 시설명 (기술명)						
	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신청 사유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영문 신기술 인증서 또는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기술 인증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	---------------	-----------



재발급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구분		☐ 신기술 인증 ☐ 신기술적용 제품·시설 확인					
재발급 대상		기술명 또는 제품·시설명					
		인증번호		적용제품·시설 확인번호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명(개인은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담당자	소속		성명		직위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선택사항)					
신청 사유		[] 분실 [] 훼손 [] 기재사항 변경 (신청사유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및 제1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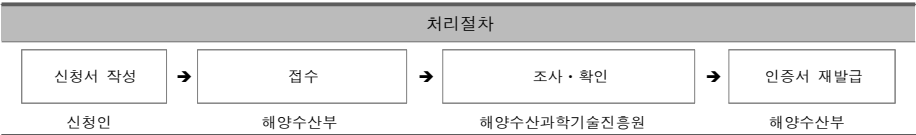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기관(업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 또는 확인서 원본(훼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2.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20일
신청인	기관명칭		대표자명
	주 생산품		업종
	종업원 수 명	자본금 백만원	매출액 억원
	수출액 만\$		
	기업유형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국공립(연) []정부출연(연) []대학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주 생산품	
확인대상	적용된 인증 신기술명		
	인증번호		인증 유효기간
	신기술이 적용된 신청제품·시설명		
제품일 경우 신청모델명			
업무 담당자	소속 부서	직위	성명
	전화(휴대전화)	팩스번호	전자우편
신기술 적용여부	(적용제품·시설에서 신기술이 차지하는 비중, 신기술이 적용제품·시설의 생산성, 효율, 품질 및 성능 등에 미치는 영향)		
구조, 품질 및 성능 우위	(기존제품·시설 대비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설계, 구조, 품질 및 성능 우위 정도 및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의 용도, 기능, 특징, 사양 등)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안정성, 품질경영 체계 등 (세부 기재 내용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 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직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심사	→	결과 통보
신청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

제 호



해양수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

1. 제품·시설명:
2. 기 관 명:
3. 대 표 자:
4. 소 재 지:
5. 인증기술명:
6. 신기술 적용 확인번호:
7. 유효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위 제품·시설은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Certificate Number:)



Certificate for the Product with New Excellent Technology

1. Product:
2. Company:
3. President:
4. Address:
5. Technology:
6. Certificate number:
7. Valid period:

The above product is based on the certified New Excellent Technology in accordance with Article 19(2) of the Act on Support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Oceans and Fisheries.

yyyy. mm. dd.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public of Korea

직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제10조제1항 관련)

1. 도안 모형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신기술입니다.

- 가. 신기술 인증번호: 신기술명-연도-일련번호
예) 해양수산신기술-2024-0001
- 나. 기술명:
- 다. 제조자명 또는 제조자를 나타내는 약호(略號):
- 라. 신기술 인증의 유효기간: 20 . . . ~ 20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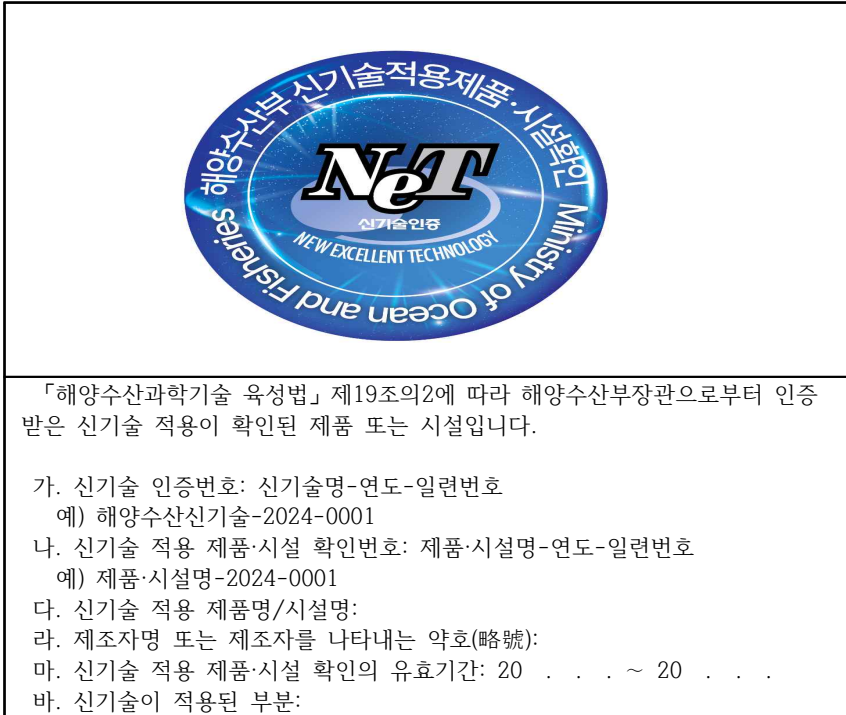
2. 도안 요령

-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홍보물**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은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은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으로 한다. 다만, 홍보물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별표 2] <신 설>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표시방법(제11조제9항 관련)

1. 도안 모형



2. 도안 요령

- 가. 크기: 표지의 크기는 표시하려는 제품, 포장 또는 용기의 크기, 형태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적당한 크기로 표시할 수 있다.
- 나. 색상: "Ne"와 "T"의 외곽선, "신기술인증", "NEW EXCELLENT TECHNOLOGY"는 검은색으로 하고, "T"의 내부는 검은색 음영 30퍼센트로 하며, 태극은 전자청색으로 한다. 다만, 제품이나 포장 또는 용기 등의 여건에 따라 지정된 색상을 사용하기 곤란할 때는 적당한 색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3. 도안 하단의 표시 요령: "마.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은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크기로, 인증받은 신기술이 적용된 부분을 표시하되, 제품 자체인 경우 "전체"로 표시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신설) 제3조(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가. 법 제23조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나.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그 부설기관 다. 그 밖에 연구 장비·시설 관리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2. 해양수산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지원을 위한 사업계획, 전문인력, 예산 등과 관련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 할 것 ②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연구 장비·시설 공동활용 연구 지원

제3조·제4조 (생 략)

<신 설>

2. 유휴 연구 장비·시설의 유지관리 및 대여

3. 연구 장비·시설 구축·운영 관련 기술 지원

4. 연구 장비·시설 관련 기관 협의체 구성·운영

제4조·제5조 (현행 제3조 및 제4조와 같음)

제5조의2(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제공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정보의 표준화

2. 연구개발정보 관리·제공에 대한 평가·개선

3. 연구개발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기술 개발

4. 연구개발정보와 다른 법령에 따라 구축·운영되고 있는 정보 체계와의 연계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의 조사, 수집 절차, 처리 주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조 (생 략)

제6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 ⑨ (생 략)

제7조·제8조 (생 략)

제9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 신기술 인증의 표시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연장된 유효기간 내에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

③ (생 략)

<신 설>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 (현행 제5조와 같음)

제7조(신기술 인증 신청 및 이의신청) ①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제9조 (현행 제7조 및 제8조와 같음)

제10조(신기술 인증의 표시방법 등)

① ----- 별표1과 --.

② ----- 신기술과 관련한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등)

① 영 제17조의2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설명서
2.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확인자료
3. 「산업표준화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품질경영과 관련된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등 설명자료

4.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명하는 자료

② 진흥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1차 심사(서류·면접심사) 2차 심사(현장평가) 및 3차 심사(종합심사)로 나누어 심사·평가를 실시하여 별지 제9호 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기술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영문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확인서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2. 확인서 보유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생년월일(법

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록 번호) 또는 주소가 변경된 경우

⑤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유효기간은 확인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성능 확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급받은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 1부
2.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서를 국내의 활용 실적, 현장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1부
- ⑦ 법 제17조의2에 따른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의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 적용제품·시설 확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